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

대상기관	대법원	일시	05년 10월 6일 10:00	번호	
주제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사건에 드러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현 황

1. 교원재임용 대표적 판결

가.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 대한 최초 판결
-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은 당연히 예정된다는 취지임.
-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 등으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창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의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

나. 1987. 6. 9. 선고 86다카2622판결

- 위 77다300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최초 판결
- 이후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계속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다.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가능케 한 최초의 판결
- 서울 미대 김민수 전 교수는 이후 승소하여 6년 반만에 복직함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4년제 대학> 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2003년)

* 이는 기간임용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 해직교수 복직조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임.

갈리교 신학대 4	건국대 7	경남대 1
경산대 2	경성대 3	경일대 1
경주대 1	경희대 1	계명대 19
고려대 5	고신대 1	광주여대 9
군산대 2	그리스도신대 6	극동대 1
꽃동네사회복지대 1	나사렛대 2	단국대 14
대구효성카대 2	대신대 6	덕성여대 3
동국대 13	동덕여대 1	동명정보대 4
동아대 9	동의대 4	명지대 2
목원대 3	목포대 2	배제대 2
부경대 4	부산대 7	부산외대 1
상주대 1	상지대 9	서울대 1
서울산업대 2	서울신대 2	서울여대 3
서원대(?) 7	선문대 (?)	성결대 16
성균관대 1	세종대 7	수원 가대 1
수원대 6	신라대 3	아세아연합신대 1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위 86다카2622판결은 이전 판결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하면서도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 변경을 하지 않았음.
- 대법관이 징계의 주체이므로 법관 징계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

2.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차별

-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공립학교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의무교육과 중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로 공교육기관과의 지위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헌법상 지위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할 것
- 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학문의 자유 보장 및 교육법정주의라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법적 취급이 법관, 국공립학교 교원, 다른 여타 직종의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차별받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
- 같은 사법상의 계약에 근거한 근로자의 취업계약의 경우 사립학교교원과 같은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상의 안정성은 특별히 취급받고 있는 등 계약관계 중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에 대비됨.
- 대법원이 86다카2622판결을 내린 후 일부 사학재단들과 대학인사권자들은 20여년동안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는 판례를 빌어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자기 눈밖에 난 교수들을 해고시켜 왔음.
- 이후 국공립교원에 대한 행정 소송은 허용하면서도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여전히 거부하여 형평성의 문제 지적됨.